

【 13 】 양주시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6. 7.
제출자 : 양주시장

1. 제안이유

- 원인자·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「기반시설부담금 제도」 도입에 따라
-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에 대한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징수된 부담금 자체 귀속분에 대한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바.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양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기반시설”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.
2. “기반시설부담금”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2장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

제3조(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)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
2. 국가의 출연·보조·융자금
3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4. 기타 수입금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

[제정 2006.1.11 법률 제7848호], 시행일 2006.7.12.

제4조 (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)

-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당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,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당금의 국가 귀속분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당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④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

-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0호를 삭제한다.

19. “기반시설부당금”이라 함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·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5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57조제1항 중 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, 기반시설부당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부당계획에 따라 작성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”를 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”로 한다.

제6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7조(기반시설부당금) ①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시에는 이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기반시설부당금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한 기반시설부당금의 부과대상, 부과방법, 부과기준 등 기반시설부당금 부과에 대하여는 「기반시설부당금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8조 내지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.